

실록(實錄) : 등록(謄錄)의 위계(位階)

오 항 녕*

1. 머리말
2. '책', 또는 '문서' ?
3. 'Archives' 로서의 실록(實錄)
4. 등록(謄錄)의 위계(位階)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적지 않은 역사기록이 남아 후대의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은 그 사료적 가

*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

주요논저 : 『朝鮮初期 史官制度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조선초기 경연의 『資治通鑑綱目』 강의」 『한국사상사학』 9, 1997 ; 「史官制度 成立史의 제문제」 『태동고전연구』 14, 1997 ;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1999.

치와 성격을 논하기 이전에 조선 전시대를 통관하여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조선왕조 실록’을 낳은 제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그 결과 실록에 대한 해제 차원의 소개를 넘어 이제 실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실록 자체를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실록을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즉 ‘실록학(實錄學)’이라고 할만한 수준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¹⁾

그런데, 이러한 실록학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마지막에서 정리되어야 할 질문이기는 하지만, ‘실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원래 익숙한 대상일수록 그 대상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는 막연한 법이다. 그래서 본고는 실록 자체의 성격에 대한 조심스런 가정과 검증을 통하여 우리의 질문을 둘러싼 안개를 걷어 보고자 한다. 흔히 그렇듯이, 이러한 접근은 가능하면 발전된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근대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Archival Science’는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텍스트의 성격을 묻는 초보적 질문으로써 실록이 ‘책’인지 ‘문서’인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 질문은, 근대 ‘Librarian Studies’와 ‘Archival Studies’의 분화와 발전을 염두에 두고, 그 두 영역이 다루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므로 ‘매우 근대적인 관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근대에 사는’ 우리가 실록을 이해하는 일이며, 언제나 역사적 사실은 보는 이의 눈에 의해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문서의 등록(謄錄)으로서 실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둘째, 등록으로서의 실록은 우리가 말하는 ‘Archives’의 성격을 띤다

1) 개괄적인 연구사 정리는 金慶洙, 『朝鮮時代 史官研究』, 국학연구원, 1998. 참조.

는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점 역시, 당대의 실록에 대한 관념과 현재 우리가 몇몇 연구논저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Archives’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의 위계’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국가기록관리, 영구문서보존의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조선시대에 생산·보존된 역사기록은 마치 사회의 신분적 위계가 있는 것처럼 나름의 위계에 따른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상징성’과 ‘의례성’이 더하여 실록은 그 위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본고는 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성격, 그 등록적 성격을 통해본 ‘Archives’로서의 보편성, 그리고 다시 등록의 위계라는 점에서 본 실록의 역사성이라는 일련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이로써, 본고가 역사기록관리의 전통에 대한 현재적 재해석의 단서를 발견하고, 우리의 문화적 성취가 역사적 경험의 단절 속에서 당위적으로 칭양되거나 관념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데서 벗어나 현실적인 추동력이 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책’, 또는 ‘문서’?

1997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도판 설명 중, 유네스코는 각각 ‘태조대왕과 태종대왕실록의 책표지(Book covers of the Annals of King Taejo and Annals of King Taejong)’ 또는 ‘성종대왕실록 권2(Chapter 2 of the Annals of King Songjong)’라 하여,²⁾ 일단 실록이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

2) http://www.unesco.org/webworld/nominations/en/korea_choson/reading.htm

재청에서는 ‘472년에 걸친 1,893권의 실록(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omprise 1,893 books covering 472 years)’ 이라 하여,³⁾ 역시 ‘권(卷)’을 ‘book’ 이라 하여 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현존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태백산본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848책 1,893권’이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실록이 편찬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이성무 교수의 경우도 그리하지만,⁴⁾ 필자도 실록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법이자 성과의 학적 축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록학’이라 명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사서’로서의 실록에 대한 사료비판이라든지⁵⁾ 그 편찬체제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논하였던⁶⁾ 것이다. 이런 견해가 설사 무반성에 기초한 관행이나 타성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한번쯤 짚어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이런 용례가 실록에 대한 상당한 진실성을 담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현재 우리는 책과 문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분에 기초하여 분과학문이 발달하여 왔음을 서두에 언급한 적이 있다.⁷⁾ 먼저 ‘문서’와 ‘책’에 대한 다음 인용문을 보자.

문서(文書, Record, 文記, 文件)란,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개인이나公私 기관이 업무 수행이나 법률적 의무의 이행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보유, 사용된 기록. 이 기록은 업무 수행이나 법률적 의무의 이행과정의 구성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

3) <http://www.ocp.go.kr/IRS/docs/english/index.html>

4)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1998.

5) 오항녕, 「조선시대 사학사: 전제의 검토, 과제의 제기」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6) 오항녕, 「朝鮮初期 實錄編纂體裁의 변화에 대한 史學史的 考察」 『한국사학사학보』 1, 2000.3.

7) 이원영, 「기록물분류의 원리: 문헌분류와의 비교」 『기록학연구』 2,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0. 10.

증거를 제공하기도 한다.⁸⁾

도서(book) : 일반적으로 '책' 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문자 등이 썬여진 종이 등을 묶어서 책자 형태로 제본한 것을 말한다...근년에는 이 가운데 특히 인쇄되어, 공식적으로 간행된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통이다...일정한 분량(49면 이상)을 지닌 비정기간행물을 말한다.⁹⁾

위에서, 문서에 대한 정의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수궁이 가지만, 도서에 관한 정의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 우선 '제본' 의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冊' 이나 '卷' 은 '종이묶음의 단위'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다. 앞서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서 각각 책과 권을 'book' 으로 번역한 데서도 확인되듯이 책과 권이 다른 것은 아니다.¹⁰⁾

그런데, 인쇄, 간행이라는 기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실록은 분명히 인쇄,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4부, 혹은 5부가 인쇄되어, 각각의 사고에 봉안되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일이다. 허나, 실록이 처음부터 복본 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종 때, 예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단일본인 실록이 화재, 전쟁으로 화를 입을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 다시 말하면 복본(複本) 제작, 또는 간행은 실제 유통을 통하여 다중에게 보급하기 위한 현재의 출판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태종 9년, 처음으로 실록편찬이 논의되었던 데서도 드러난다. 실록이라는 방식의 기록관리는 사초를 비롯한 문서의 유실 가능성(쥐나 벌레가 쏘다든지, 썩는다든지, 도난 당한다든지)이 높은 상황에서 선택한 보존

8) ICA,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r Records:Principles and Context*, p.7, MPSR-A Study Programme, 1999.

9)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83쪽.

10)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작업과정 중에서 문서의 '제본' 과정이 들어 있다. 즉, 이관 문서 중 편철상태가 좋지 않은 문서를 다시 묶는 과정이다. 이는 뒤에 말한 '성책(成冊)' 과 같은 것이다.

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핵심적인 기준은 ‘출판, 간행’ 이 아니라 ‘공공의 유통 보급을 위한’ 출판, 간행일 터인데,¹¹⁾ 주지하듯이 실록은 사관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했으며, 국가 정책 결정이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열람할 경우에도 사관을 통하여 내용을 알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록은 흔히 요즘 말하는 ‘책’ 이 아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외에도, 실록을 책으로 이해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록이 ‘편찬’ 되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편찬’ 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인식은 실록이 ‘출판된 학문적 연구성과(published work of scholarship)’ 라는 우리의 관념과 상통한다. 편찬과정을 거쳐 편찬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도 충분하며, 나아가 사관들의 사평(史評)에 이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편저자의 의도’ 라는 원자료의 재구성에 의한 기록방식을 띠고 있어 더욱 역사서로 볼 여지는 많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접근과 추론적 이해방식은 좀더 들어가 보면 재고할 필요가 생긴다.

이 문제는 개념적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즉, 실록 편찬의 지침이 된 시정기찬수범례(時政記纂修凡例)나 실록찬수범례를 통하여 실록의 ‘편찬’ 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시정기찬수범례는 사관이 춘추관에서 관리하는 문서의 기록 및 정리

11) 사실, ‘책’ 에 대한 개념적 엄밀성으로 보면, 필자는, ‘A book may be defined, therefore, as a written (or printed) message of considerable length, meant for public circulation and recorded on materials that are light yet durable enough to afford comparatively easy portability.’ 라는 정의에 더 주목이 간다. Encyclopedia Britannica(CD), 1999. ‘움직일 수 있는 매체에 쓰여져, 실제 보급을 위해 간행된 의사 전달 수단’ 이라고 줄일 수 있겠다. 더하여, ‘출간된 문학적, 학문적 업적(published work of literature or scholarship)’ 이라는 정의도 곱씹어 볼만한 대목이다.

방식인데,¹²⁾ 실록의 찬수범례는 이를 기초로 좀더 항목이 늘어난다. 먼저 시정기 찬수범례에 나타나는 기록을 정리해보겠다.¹³⁾

- ① 날짜, 간지(干支), 날씨
- ② 왕의 동정(常參이나 經筵)
- ③ 입시(入侍) 때의 대화 및 언혁, 시비, 포폄
- ④ 대간(臺諫)의 계사(啓辭)
- ⑤ 소장(疏狀)
- ⑥ 길흉(吉凶) 제례(祭禮)
- ⑦ 과거급제자
- ⑧ 관직임명
- ⑨ 각사(各司)의 계하문서(啓下文書)

이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날짜 등의 식별코드,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史草)의 범주(②③), 그리고 각 관청이나 신료들의 문서 중에서 채록하는 기록(④~⑨) 등이다. 실록찬수범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된다.¹⁴⁾

- ① 사관의 시정기, 주서일기(注書日記), 내외 겸춘추(兼春秋) 기록, 비변사 장계, 의금부 추안(推案), 형조 중요문서[緊關文書]
- ② 조칙(詔勅) 및 본국과 관계된 교서(敎書)
- ③ 명신(名臣)의 졸기(卒記)
- ④ 재해[災異]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초록

12) '시정기찬수'라 해서 이것이 어떤 주관적 편찬 작업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요즘으로 하면, 편철(編綴, Filing)작업의 하나이며, 문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류(分類, Classification)나 정리(整理, Arrangement)에 속하는 일이다.

13) 『六典條例』 春秋館 時政記條.

14) 『實錄廳儀軌』(英宗大王實錄廳儀軌) 「纂修凡例」, 藏書閣. 후술하듯이 순조 때 만들어진 『正宗大王實錄廳儀軌』의 찬수범례부터는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실록정의례』에 따르면 대체로 인용한 찬수범례와 동일하다.

- ⑤ 군병수(軍兵數), 중앙과 지방의 법제[京外法制], 호구수(戶口數)는 각 해당 문서를 찾아 상록
- ⑥ 무의 번잡한 문자는 잘 평가하여[參量] 줄임으로써[刪去] 간명하고 압축적이도록[簡重] 할 것!

실록 편찬 때에 작성되는 사론이라고 할 수 있는 ③의 줄기와, 편찬의 산절(刪節, 臈錄) 원칙인 ⑥을 제외하면, 역시 각 관청의 문서를 ‘옹거적인’, 즉 등록(臈錄) 작업이 곧 실록편찬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는 시정기찬수범례와 범주상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편찬의 성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가) 등록관 특별인사(臈錄官別單) 병조정랑(兵曹正郎) 심세정(沈世鼎)...¹⁶⁾

나) 실록개수청등록낭청(實錄改修廳臈錄郎廳)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이언강(李彦綱)...¹⁷⁾

실록 편찬에 관한 종합보고서인 위의 『실록정의궤(實錄廳儀軌)』의 인사기록에서 보듯이, 당시 사람들이 실록 편찬 과정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책의 편찬이라기보다는 ‘등록(臈錄)’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각 등록실(房)로 나뉘어 초초(初草), 중초(中草), 정초(正草)의 편찬 작업을 진행할 때 임명되는 실무자가 다름 아닌 ‘등록관(臈錄官)’, ‘등록낭청(臈錄郎廳)’ 이었던 데서도 확인된다.

끝으로, 사관의 기록, 즉 사론(史論)을 포함하여 사관이 보고들은 것[見聞]을 기록한 사초(史草)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실

15) 등록의 실체는 그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안, 조건 및 배경,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延甲洙, 「朝鮮後期 臈錄에 대한 研究」 『외대사학』 12, 2000.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본고에서 말하는 ‘등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16) 『實錄廳儀軌』(仁祖朝) 藏書閣(1400-156)

17) 『實錄改修廳儀軌』(顯宗朝), 藏書閣(1410-163)

제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관은 국가기관인 춘추관의 관원으로 그의 사초는 국가의 공식문서로 인정받았다. 물론 이 사초에는 사관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주관성(主觀性)은 그들에게 사관의 지위가 부여되는 순간 공적(公的)인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¹⁸⁾ 그러므로 사관의 사초에 칭찬과 비판(褒貶)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조선시대-나아가서는 동아시아-등록시스템의 특수성이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⁹⁾

우리가, 앞서 언급한 문서에 대한 정의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시 영구문서보존방법으로 성책(成冊)과 등록(謄錄)이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⁰⁾ 일련의 실록 편찬과정은 곧 문서의 등록과정이었다. 따라서 실록은 등록의 하나이며, 본질적으로는 책이라기보다는 문서의 성격을 띠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18) 사관을 'Court-diarist' 또는 'Court-historian'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대 로마에도 사초와 유사한 기록방식이 있었다. 이를 'daily court-journals' 이라 하는데, 법적 증거 능력이 있었음은 물론 로마 말에는 공공의 영구보존기록물(public archives)로써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T.R.Schellenberg, *Modern Archives*, 1956(SAA 1998), p.65.

19)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공공기관기록물관리예관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이 ‘결재된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로 공식문서와 함께 국가기관의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사초의 재현인 셈인데,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기록은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0) 김상호, 『기록보존론』, 아세아문화사, 1999, 108~109 쪽.

참고 : 책(Libraries)과 문서(Archives)의 차이

범주	책(Libraries)	연구보존문서(Archives)
성격	출판 개별 아이템 독립적 의미 다른 곳에서도 이용 가능	출판되지 않음 연관된 아이템 그룹 다른 아이템과의 관계를 통하여 의미를 가짐 유일성
생산자	다수의 각기 다른 개인이나 기관	모태가 되는 기관이나 조직
생산 방식	분리, 독립된 활동	유기적·자연적 업무과정
취득 방법	단일 아이템을 선별 결정의 수정 반복 가능	집합적 평가 결정을 반복 불가능 (폐기는 곧 영원한 폐기)
정리	미리 정해진 주제 분류	출처주의 및 원질서(구조 및 기능과 관련)
디스크립션	개별 아이템	집합적(문서군이나 시리즈)
디스크립션매체	인쇄된 양식에 작성(제목, 페이지, 목차, 색인) 카드 목록, 온라인 공공이용시스템(OPAC)	아키비스트가 준비해야 함 편람, 인벤토리, 온라인 시스템
이용	열린 서가 아이템이 판매 유통	닫힌 서가 아이템이 유통 판매 안됨

*Gregory S. Hunter, *Developing and maintaining practical Archives*, 1997, 뉴욕

3. 'Archives' 로서의 실록(實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실록을 다시 근대 문서의 본질적 성격과 비교하면 좀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서는 네가지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형식상의 지속성(static in form), 공신력(authority), 유일성(unique), 진본성(authentic).²¹⁾

여기서, 형식 또는 형태상의 지속성과 유일성의 개념은 등록시스템에서는 단순대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등록은 옮겨 적는 일이므로 ‘형식의 지속성’을 전제로 한 일이 아니며, 보존환경이 열악했던 시대적 제약과 예상 가능한 사회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본 제작을 통하여 분산보존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등록으로서의 실록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Archives’와 어떤 개념적 실제적 상관성을 갖는가? 다음의 정의를 보자.

아카이브즈(Archives)란, 꼭 현재 업무상 필요가 없어진 문서만을 말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필요성이 없어진 문서로 영구보존(permanent preservation)하기 위하여 선별된 지속적 가치(enduring value)를 가진 문서.²²⁾

위의 정의와 실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록 편찬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실록편찬의 시점과 그 과정에서 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Archives’ 여부는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어느 시점-즉, 대개 업무활용이 끝난 뒤-에 영구보존을 위해 선별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시정기찬수범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정부·육조·사헌부·사간원·홍문관·승정원 등 각 주요 기관의 문서가 춘추관에 이관되어 보관되는데, 이들 문서는 각 기관에 배치된 겸임사관[兼春秋]의 책임하에 이관되었다. 이들은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緊關]

21) ICA,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r Records:Principles and Context*, MPSR-A Study Programme, 1999, p.7

22) ICA, *Managing Archives*, MPSR-A Study Programme, 1999, p.5.

문서로 실록에 등재될 터였다.

한편, 사관의 사초도 실록편찬의 중요 자료였다. 사관은 자신이 직접 목도하거나 국정에 참여하여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한 부는 춘추관에 보관하고, 한 부는 집에 두고 필요한대로 첨가 기록하였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 사초의 중요성은 조선 초기인 세종 31년 사초관리를 위한 6개항의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초를 훔치거나 훼손한 경우 ‘제서를 도둑질한 죄를 다스리는 벌칙(盜制書律)’, ‘제서를 폐기, 손상한 죄를 다스리는 벌칙(棄毀制書律)’을 적용하여 국왕의 인가를 얻은 문서[制書]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참형(斬刑) 등 신체형을 가함은 물론 그 자손의 관직 등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춘추관에서 또는 사관의 집에서 엄격히 관리되던 사초를 포함한 시정기가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던 것이 실록인데, 주지하듯이 그 시점은 국왕이 승하하고 다음 왕이 상례(喪禮)와 선왕(先王)에 대한 배향 공신책봉(配享功臣冊封)을 마친 이후였다(이 점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실록의 의례성,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들 문서가 영구문서(또는 등록)인 실록으로서 영구보존되는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정기를 비롯한 문서가 실록편찬 이전까지는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영구문서로서만 남아 있던 것이다.

등록과정에는 주로 이미 사관을 지낸 전임사관(前任史官)이나 겸임 사관들이 참여하여 내용의 요약을 포함한 등록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평가(參量)에 의하여 여러 문서 중 어느 것이 실록에 등록될지 여부가 가려지고, 영구문서인 실록에 등재되지 못한 사초나 문서는 세초(洗草, maceration)를 통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는 한편, 재생종이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요즘과 다를 바 없는 폐기과정이었다.

결국 실록편찬이란 물리적으로 보면 편찬자료(record material)를 영

구문서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폐기[洗草]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처분 내지 처리(Disposal, Disposition)의 과정이었는데, 문서의 생산(사초의 경우)이나 이관 이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국왕의 재위 연한에 달려 있었다. 물론 국왕의 사후 바로 편찬되는 관례는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이며 이전에는 사후 4년 또는 1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초 태종 9년 태조실록의 편찬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처리일정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실록편찬 시기를 국왕의 사후 바로 하자는 의견과 바로 할 경우 사초나 기밀문서가 누설되어 분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3대가 지난 뒤에 하자는 의견이 그것이었다.²³⁾ 3대 정도 지나면 당대의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한 이후일 것이니 사화(史禍)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의 논쟁은 실록편찬을 재상이 주도하는 시대적 제약을 배경으로 벌어진 것이고, 사초 관리와 편찬의 엄격성 및 등록 업무의 사관 주도라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된 이후에는 다시없었던 논쟁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실록에 등재될 문서가 ‘잠재적인 영구가치를 지닌 비밀 또는 비공개 문서’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적어도 경험적으로 최고권력인 국왕의 간섭이 배제된 시기에는 문서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꺼내어 편찬하는 편이 장기보관으로 인한 문서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이렇듯이 요즘 관념으로 보아 책보다는 문서에 가까운 실록의 성격에 더하여, 생산·이관에서 평가·처리를 거쳐 영구보존문서로서의 실록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Archives’의 정의, 즉 ‘영구보존을 위하여 선별된, 지속적 가치를 지닌 문서’의 하나로 판단되는 것이다.

23) 논쟁의 전말과 의의에 대해서는, 오항녕, 『조선초기 사관제도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32~240 쪽.

24) 조선의 경우, 이러한 경험칙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는 데 걸린 시간이 100여년이다. 태조 원년(1392년)에서 중종 원년(1506)까지.

실록은 사초를 생산하거나 이관 받고, 문서 처리과정을 거쳐 실록을 완성하여 사고(史庫, Archives)에 보존하여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관(Archivist)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었다. 결국 실록은 ‘영속적 기억(perpetual memory)’으로서 ‘공적 신뢰성(public faith)’을 가지고²⁵⁾ 후대(後代)를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왕조나 국가가 망한 뒤의 사람들에게나 공개될 영구보존비밀기록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실록의 또 다른 성격은 조선시대에 생산, 보존된 여러 ‘Archives’ 중, ‘등록의 위계’로 설명할 수 있는 특수한 위상을 보여준다.

4. 등록(謄錄)의 위계(位階)

실록은 그 자체로 매우 역사적인 현상이다. 중국에서는 당 태종 때에 고조실록(高祖實錄)을 편찬한 이래 황제의 사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 통일신라 후반기에는 실록 편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확고한 틀을 잡았다가 조선과 함께 그 수명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이 전근대시기 매우 보편적인 문서 보관 또는 보존 방법이였음에도 불구하고,²⁶⁾ 그 등록시스템에서 실록은 왜 ‘실록’이란 이름

25) Luciana Duranti,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vol 57, 1994. 그는 로마법 관념에서, 문서와 사실의 관계를 표현하는 ‘영속적 기억’과, ‘Archives’와 그것이 기능하는 사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공적 신뢰성’을 추출하여 ‘Archives’의 본질적 성격을 추론하고 있다.

26) 김유경 교수에 따르면, 등록시스템은 재질이나 문서크기의 다양성 때문에 문서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시대에는 매우 실제적인 문서관리방법이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현재로서는 왜 실록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작성되기 시작하였는지, 왜 실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실록을 위시한 등록시스템에 관해서는 잠정적인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적 위계와 같은 어떤 기록의 위계, 등록의 위계가 있지 않나 하는 가정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실록은 조선시대 ‘아카이브즈(Archives)’ 중에서도 특수한 ‘아카이브즈’에 붙인 이름이다. 흔히, 실록이 국왕의 재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록을 해당 국왕의 기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앞서 시정기찬수범례나 실록찬수범례에서 보았듯이 올바르게 바르지 않은 이해이다. 실록을 국왕 단위로 편찬한 것은 당시 시기구분의 가장 명확한 기준이 국왕의 재위기간이었다는 점과 국왕의 교체기는 실록이라는 비밀기록의 등록 작성에 적절한 시점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실록의 내용은 실록으로 평가되기 전에도 사관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었던 만큼 일단 실록이 된 뒤에도 ‘국사(國史, National Archives)’, ‘국조사(國朝史)’로 부를 만큼 특별한 위상을 가진 국가기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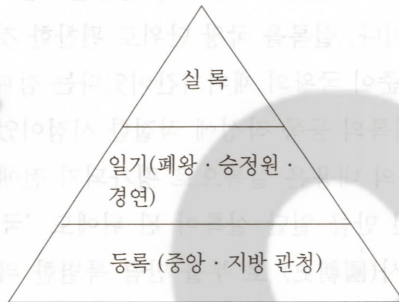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여러 부류의 ‘아카이브즈’가 있었다. 지방기록의 경우에도 호적(戶籍)이나 양안(量案)처럼 성책하거나, 보첩(報牒), 이문(移文), 관문(關文), 전령(傳命) 등 일반 공첩(公牒)은 원문은 보존하지 않고 등서(謄書)하여 남겨놓았는데, 중요성에 따라 영구보존여부를 판단하여 일정기간 보존하다가 폐기하거나, 등록(謄錄)을 합철하거나 재등서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구 보존하였다.²⁷⁾ 이렇듯이 일반 관청의 문서는 통상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공식최고기관이라 하더

종이의 규격화, 즉 현재 A4(210×294) 용지는 1922년 독일공업규격 이후에 일반화된 것이다.(2000년 10월 10일 전화통화) 그러니까, 서식의 통일과는 별도로 매체의 불규칙성은 오래 지속된 셈이다.

27) 金泰雄,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變化에 관한 試論」 『기록보존』 13, 2000.

라도 ‘등록’이란 이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예로는 『의정부등록』, 『비변사등록』, 『각사등록』 등이 있다.

한편, 폐왕(廢王)이나 국왕의 비서실, 국왕의 고문위원실(홍문관)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일기(日記)’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산군일기』²⁸⁾, 『승정원일기』(『당후일기(堂後日記)』, 『주서일기(注書日記)』), 『경연일기(經筵日記)』 등이 그것이다.²⁹⁾ 이렇게 본다면, 실록이라는 명칭의 발생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원을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등록을 골간으로 했던 영구보존 국가기록관리체제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謄錄의 位階〉

28) 유네스코에서는 ‘the Diaries of Prince Yonsan-gun’이라고 번역하였는데, ‘Prince’란 착오이다.

http://www.unesco.org/webworld/nominations/en/korea_choson/reading.htm
 ‘君’은 주자의 『자치통감강목』 「범례」에서 온 말로, ‘(왕의 자격이 없어) 폐위된(dethroned)’이란 뜻이다.

29) 여기서 개인의 ‘일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수고(手稿), 즉 ‘manuscripts’의 문제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본고에서 유보해야 할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 일반 관청의 등록 역시 ‘일기’라고 하여 등록과 일기가 왕왕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24, 1997. 그러므로 본고의 서술처럼 일기와 등록 사이에 명확한 위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한편, 본고의 도식처럼 일기와 등록 사이에 기록의 위계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은 따로 정리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등록의 위계가³⁰⁾ 성립한 이유로는 실록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실록이 국왕조차도 열람할 수 없게끔 관리됨으로써 국정과 관료사회의 투명성 및 자정능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³¹⁾ 이는 기록을 통하여 후대의 평가를 기다린다는 인식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도록 했던 사상적 기반, 즉 성리학이라는 세계관에 힘입은 바 크다.³²⁾

한편, 이러한 현실적 기능은 실록(또는 실록편찬)의 의례성을 통하여 표출되었고, 역으로 그 의례성은 실록의 현실적 의의를 강화하였다.³³⁾ ‘아키비스트(archivist)’ 인 사관이 관료제의 논리로 보면 특수한 자천제(自薦制)라는 인사방식을 통하여 임용된 것을 위시하여, 세초연(洗草

30) 이러한 등록의 위계는 ‘의례’와 ‘등록’의 용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간혹 둘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라고 생각된다. 한편, 법령의 경우에도 ‘法典’보다 격이 떨어지는 법령집을 ‘등록’이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연갑수,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研究」, 198 쪽), 공문서 전반에 걸쳐 등록의 위계는 존재하였다.

31) 필자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경계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낳은 일련의 사회 현상을 ‘떠든 아이 효과’라고 부른다. 즉,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안게실 때, 교실의 소란을 막는 고전적인 방법의 하나가 칠판에 이름을 적는 것인데, 이때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름이 지워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처벌’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실은 어느 정도 정돈된 상황을 유지한다. 물론 적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계 효과는 있다. ‘떠든 아이 효과’는 기록과 사회 및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32) 오항녕,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1999. 이 점은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가문서관리가 갖는 의미와 연관하여, ‘Archival Studies’를 탐구하는 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시사점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 ‘근대인’들에게 공공문서관 무엇인가, 특히, 민주주의와 영구보존문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33) 오톨레는 이를 영구보존문서의 ‘상징적(symbolic)’ 성격이라고 하였다. James M.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56, Spring, 1993. 허나 필자는 실록의 성격을 논할 때는 ‘상징성’보다 ‘의례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례성’은 ‘禮’를 통하여 ‘위계와 차별성[分]’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宴), 봉안식(奉安式)은 물론 편찬 참여자들에 대한 상전(賞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예식을 통하여 실록이 다른 여타의 ‘아카이브즈’와 다른 차원의 것임이 천명되기 때문이다. 활자와 종이, 먹 등 서지적(書誌的) 측면에서도 각별한 배려가 곁들여져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³⁴⁾ 특히, 국왕의 전위(傳位), 곧 정통성의 계승은 곧 실록의 편찬으로 마무리되었다.³⁵⁾

5. 맺음말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실록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책’과 ‘문서’라는 요즘 사용하는 개념을 통하여 그 성격을 찾아보았던 바, 우리는 전근대 문서보존의 일반적 방법이었던 등록의 하나가 실록이라는 답을 얻었다. 그리고 실록은 영구보존등록이라는 점에서 요즘의 ‘아카이브즈’에 속하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실록을 역사서로 생각하고 있었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과 ‘문서’ 중에서 문서의 성격을 띤 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춘추관을 포함한 사고(史庫)를 영구보존문서를 보존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아카이브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34) 배현숙, 「朝鮮實錄의 書誌的 研究」 中央大 圖書館學科 博士論文, 1989, 한편, 김유경 교수는 본고에 대한 2000년 12월 2일 토론에서, 로마 교황문서가 실록의 지위나 의례성, 상징성과 유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주었는데, 유용한 단서라고 생각한다.

35) 이는 현재 미국 대통령기록관(President Library)의 설립과도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대통령 ‘기념관’의 건립문제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사실의 관찰은 그 현상도 현상이지만, 심층구조(deep-structure)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된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해는 근간 새로운 연구와 이론정립을 필요로 하는 ‘Archival studies’의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를 준다. 새로운 학문의 정립, 또는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의 번역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우리의 개념 전용(轉用) 과정을 보면 아직 학적 논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Archival studies’만 하여도, ‘기록관리학’ ‘기록보존학’ ‘기록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전 대비식 번역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거나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 우리의 언어 현실(역사적 경험을 포함한) 사이를 오가는 학문적 탐구과정에서 적절한 개념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온축(蘊蓄)이 적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보편적 가치와 성격을 발견하고, 현재적 의의를 찾아내는 작업은 선진문물의 수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³⁶⁾

한편, 실록은 그 편찬과정, 사회적 기능, 의례성에 비추어 조선시대의 ‘엘리트’에 속하는 기록이었다. 실록에 등재될 문서의 생산, 이관, 보관에서 시작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사회의 자기정화능력을 지키고, 그러한 실제적 의미는 곧바로 실록편찬이 곧 정통성을 상징하는 의례성

36) 종종 필자가 ‘Archives’의 번역어로 춘추관이나 사관, 사고라는 말을 쓰자고 할 때, 흔히 ‘전근대적’ 용어라는 이유로, 또는 썩스럽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근대 ‘Archives’의 기점을 프랑스혁명 이후의 ‘Archives Nationales’(1789)와 ‘Archives Departementales’(1796)에서 잡고 있지만, ‘Archives’란 용어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다른 단어의 채용이 대안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개념이며, 개념은 역사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근대 사회조직의 특징 중 하나가 ‘작명의 미학(Aesthetics of Naming)’이 없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하나의 예가 중국의 ‘당안(檔案)’이란 신조어이다. 중국인민들에게는 안된 소리지만, 그저 ‘선반에 올려놓은 문서’ 정도의 조어이며, 용어의 격조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 결합되면서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우리는 이를 ‘등록의 위계’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등록(騰錄)이 문서관리, 국가기록 일반의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문서의 영역에서 다루어야겠지만, 연구 대상으로서의 사료라는 점에서 보면 엄연한 사료의 변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한 사료비판(Text Critic)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다만, 실록의 성격이나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데 얼마라도 기여한다면 필자가 ‘기록생산’ 에 들인 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의 춘추관, 즉 정부기록보존소의 국가기록전시관에 들어가면 정면에 태백산 사고의 모형이 있고, 당연히 전시실 첫 자리도 실록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회의실에 걸린 액자를 비롯하여, 정부기록보존소의 정통성의 상징으로 실록을 드는 데 이의가 없는 듯하다. 평소 이 ‘이의가 없는’ 데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필자의 궁금증이 이 글을 작성하면서 어느 정도 풀린 것도 망외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Abstract

The Sillok as National Supreme Archives

:An archival interpretation

Oh, Hang-Nyong

History always be re-interpreted as the time flows.

'The Sillok', which was registered in Memory of World of UNESCO in 1997, is comprehensive documents of the Chosun Dynasty, which had been compiled after kings' death, The Sillok encompasses 473 years of the reign in their 848 volumes(1,893 chapters). It was a history itself and has been main source in studying Korean history. Due to the rise of studies on the Sillok, time has come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Sillok and to criticize the text, which would be called 'The Sillok-Stud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d three concepts that categorize the nature of the Sillok as historical materials ;Is it book or record?; The Sillok in register system in pre-modern society; And the Sillok as the National Archives.

Korean historians, including myself, haven't yet examined the question whether the Sillok is the Book or Record in terms of archival science. At first, I regarded it as history book, and, with this presupposition, wrote several paper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llok. However, I recognized that the Sillok are close to record rather than history book as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glossary of librarian study, OED(Oxford English Dictionary) and Encyclopedia of Britannica, etc. Definitely, the Sillok was neither compiled and published to be read and sold publicly, nor meant to the works of literature or scholarship. one may say that the court-

historians wrote comments on the facts and therefore it was just scholarly work. However, because the court-historians produced their comments on their own businesses, the outcome of 'their scholarly works' were also records conceptually, as were daily court-journalists in Rome. Its publication also had a absolutely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modern society. It was a method to preserve the important national records and distributed each edition of them to plural repositories for its safe and security.

How can we explain its book-like shape and the procedure of compilation after a kings' death. The answer is as follows ; In pre-modern society, it was a common record-keeping system in the world to register records materials in order to arrange the materials of different sizes and to store them conveniently. And the lack of scientific preservation or conservation skill also encouraged them to register original records. Actually, the court-histo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compiling process called themselves "registering officers". On the other hand, similar to social hierarchy, there was a hierarchical system of records, and the Sillok was placed at the top of this hierarchy. In conclusion, the Sillok was a kind of registered records in the middle ages and the supreme records in the records-world.

In addition to this, we can also conceptualize the Sillok as archives. Through the compiling proces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records were selected to be the parts of Sillok. This process corresponds to the modern records appraisal. In the next step, it was preserved in the Four Archives(史庫) which located at remote site as archives and only accessible by the descendents in the future, who might be the people of the next dynasty. And nobody could access or read the documents at that time except the authorized court-historians who were archivists of the

Chosun Dynasty. From this perspective, I conclude that the Sillok was the supreme confidential archives in the register system.

I work for the Government Archives as a historian and archivist. Whenever I entered the exhibition hall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and saw the replica of the Archives of Taebeak Mountain built during Chosun period, I always asked to myself a question whether the Sillok can be a symbol of the archival tradition of Korea and the GARS. Now, I can say, 'Yes!' definitely.

